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

의안 번호	28

제 출 일 : 2026. 8. 3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**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**의 운용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·군 분담금으로 지원함에 있어,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○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의2 (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)

○「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」제3조의4, 5, 6(협의회의 기능·구성·운영)

○「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」제16조(운용예산의 분담)

3. 주요내용

○ **사 업 명** :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

○ **사업목적**

-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**사업기간** : 2004년 ~ 지속추진 중

○ **출연금 개요**

- 지원내용 :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비용지원
- 2027년 출연금 : 80백만원

※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·군별 각80백만원 출연

○ **출연대상 :**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

- 일반현황
 - 설립목적 :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갈등 중재·조정기구('03. 11. 출범)
- 구성현황 : 기후부, 경기도, 7개시·군(남양주, 가평, 광주, 양평, 여주, 용인, 이천)

※ 기후부 1차관, 한강유역청장, 물환경정책관, 경기도 경제부지사, 7개 시장·군수, 의회의장, 주민대표

○ **출연현황**

(단위: 천원)

합계	'04~'19	'20	'21	'22	'23	'24	'25	'26
1,470,000	91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
○ **주요 추진내용**

-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추진
 -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등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의
- 팔당지역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
 - 수변구역 규제변화에 따른 팔당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, 팔당수계 특화발전방안 수립 연구,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허용에 따른 수질·생태영향 및 보상방안 연구, 정기간행물 제작 등

○ **기대효과**

- 기후부와 지자체, 지역주민 간의 갈등 중재와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팔당 상수원 지역의 수질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 실현